

# TTC 표준화회의의 규정 개정

## - 표준화체제의 재고 -

역자 | 주숙영

출처 | 일본, TTC Report 동계호(2003, February Vol.17/NO.2)

2002년 12월 10일(화), 제96회 TTC 이사회에서 표준화회의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표준화회의의 부의장과 부문위원장에 의해 구성된 표준화 전략 회의에서 2년에 걸쳐 검토를 진행해온 TTC 표준화 체제 재고의 검토결과를 포함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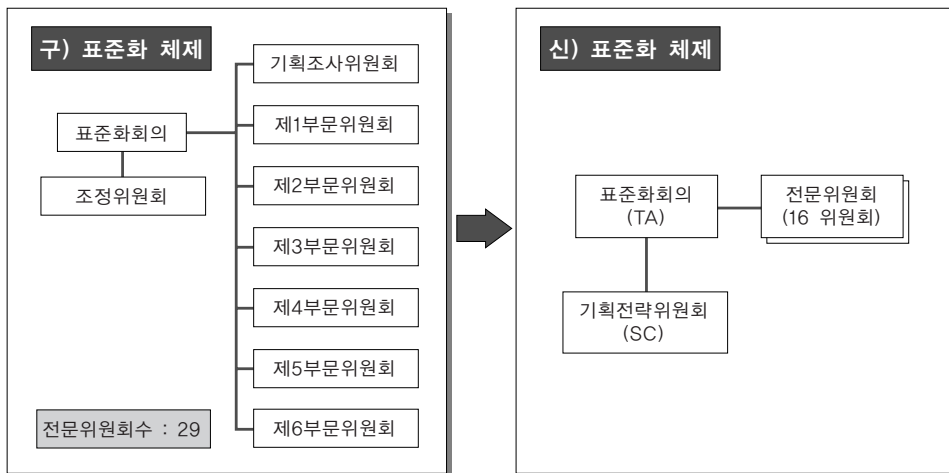
### ■ 재고의 기본방침은

- 표준화회의의 전체를 재점검하고,
- 변화에 즉각 대응할수 있는 구성을 희구하며,
  - Top-down적인 기능의 필요성
  - Simple한 구성

- GSC 같은 대외활동과 연결한 구성임

### ■ 주요 개정사항은

- 조정위원회를 폐지한다.
- 부문위원회를 폐지한다.
- 표준화회의의 근간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 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 중장기 표준화 전략의 책정
  - 신규과제의 선정
  - 전문위원회 통·폐합, 개정에 의한 TTC의 표준화 체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변경됩니다.



■ 신 전문위원회의 명칭 및 담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chitecture(Service Platform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DN 및 망기능</li> <li>• IP 텔레포니(architecture, service Platform)</li> <li>• IP 텔레포니(신호제어)</li> <li>• IP 텔레포니(security)</li> <li>• 브로드밴드 및 IP base망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기여</li> <li>• IP network 기반기술</li> </ul> </li> </ul>	archit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 신호방식</li> <li>• 사업자간 상호접속 목적의 공통 interface</li> <li>• 망간 신호방식(ISUP)</li> </ul> </li> </ul>	신호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DN과 다른 망 등, 망 사이를 접속하는 사이의 전송방식</li> <li>• ISDN 및 access 망과 단말간의 물리구성 및 전기적 조건</li> </ul> </li> </ul>	정보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L</li> </ul> </li> </ul>	D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 layer 공통 protocol</li> <li>• IP-VPN(Qos)</li> <li>• voip(Qos)</li> </ul> </li> </ul>	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VPN(security)</li> </ul> </li> </ul>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a 부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ematique · document 교환(fax)</li> <li>• 음성부호화 방식</li> <li>• 영상부호화</li> </ul> </li> </ul>	media 부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ultimedia plat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ultimedia 통신방식</li> </ul> </li> </ul>	multimedia plat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network</li> </ul> </li> </ul>	기업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me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me LAN(addressing)</li> </ul> </li> </ul>	Home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VS upstream에 관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VS의 국제 표준화</li> </ul> </li> </ul>	upst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nagement</li> </ul> </li> </ul>	이동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GPP</li> </ul> </li> </ul>	3G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GPP2</li> </ul> </li> </ul>	3GPP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 IP-NW</li> </ul> </li> </ul>	IP-based IMT Plat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망에 관련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C, PHS, FWA</li> </ul> </li> </ul>	PDC · PHS · FWA

## TTC 표준화회의 규정

- 2002년 12월 10일 제96회 TTC 이사회 결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정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이하[정보통신기술위원회라 함])의 표준화 회의조직, 위원의 선정방법 그 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준화회의의 구성)

표준화 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표준화회의 의장 및 부의장, 제4조에서 정한 표준화회의 위원 및 제7조에서 정한 표준화회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표준화회의의 권한)

표준화회의는 다음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1)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표준해석의 승인
- (3) 중장기 표준화전략의 결정
- (4)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획전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5) 조사 및 연구

### 제4조(표준화회의의 위원)

1. 정 회원은 정회원을 대표하는 직원을 표준화회의 위원으로서 등록하는 것으로 표준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2. 표준화회의의 위원은 표준화회의에서 행하여진 정보통신 Network에 관련된 표준(이하[표준]이라 함)의 작성,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에 종사한다.

### 제5조(표준화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

1. 표준화회의에 의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의장을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정회원의 직원으로서 입후보에 의해 표준화회의에서 추천자를 선출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선출에는 제17조에서 정하는 투표권 합계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복수 입후보자가 있고, 어느 쪽의 입후보자도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상위 2명의 입후보자에 대해 다시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추천자로 한다.
3. 의장은 표준화회의의 활동을 총괄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해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또는 결원 시에는 다음항에서 정한 석차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의장의 석차는 추천자를 선출할 때 득표가 많은 순으로 한다. 단, 득표가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석차를 결정한다.

### 제6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1.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칙으로 3기 연속해서는 할 수 없다.
2. 의장 및 부의장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에 있어서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임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 제7조(학식 경험자에 대한 위촉)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학식경험자에 대해서 표준화회

의 특별위원으로서 표준화회의의 활동의 참가를 위촉한다. 단, 특별위원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 제8조(Observer)

정회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표준화회의의 의장의 승인에 의한 방청인으로서 표준화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준화회의의 개최)

1. 표준화회의는 매년 1회 일정시기에 개최하는 것이며, 다음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1) 표준을 신규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 (2) 표준화회의의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제10조에서 정한 기획전략위원회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내용을 정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 (3)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표준화회의의 개최 및 개최방법은 표준화회의의 의장이 결정한다.
3. 표준화회의의 의장은 제1항 (2)에서 정한 경우에는, 청구한날로부터 4주 이내에 표준화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4. 그 외 표준화회의의 운영, 표준의 결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0조(기획전략위원회)

표준화회의에 기획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획전략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① 중장기 표준화전략(안)의 책정
- ② 제14조에서 정한 전문위원회 활동의 총괄
- ③ 전문위원회의 신설, 통합, 분리 및 폐지

- ④ 표준화회의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에 대한 대처
- ⑤ 표준의 보급 활동
- ⑥ 표준화 단체와의 국제연계활동 및 다른 표준화단체 활동의 조사
- ⑦ 그 외 표준화회의에서 정한 사항

#### 제11조(기획전략위원회의 구성)

기획전략위원회는 표준화회의의 의장이 주재하고, 다음에 게재된 자로 구성한다.

- ① 표준화회의의 정부의장
- ②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획전략위원회 위원
- ③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기획전략위원회 특별위원
- ④ 전문이사,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무국 직원. 단, 투표권은 갖고 있지 않다.

#### 제12조(기획전략위원회 위원)

1. 기획전략위원회의 정원은 정회원의 1할(소수점이하 버림)에서 표준화회의의 정부의장의 수를 뺀 사람 수를 상한으로 한다. 임기마다 정원은 기획전략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표준화회의에서 승인한다. 승인에는 제17조에서 정한 투표권 합계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기획전략위원회 위원은 정회원의 직원으로부터 입후보에 의해, 표준화 회의에서 투표에 의해 선임한다. 입후보자마다 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선임에는 제17조에서 정한 투표권 합계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입후보자가 앞의 항에서 정한 정원을 넘을 경우는 득표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앞의 항에서 정한 순위까지가 선임자가 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3. 한 회원당 기획전략위원회 위원의 총수는 기획전략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과반수를 넘는 경우는 입후보자마다의 득표에 근거 순위를 결정하고 정원의 과반수를 넘는 순위의 입 후보자는 낙선한다. 또한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추 첨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4. 기획전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 단 원칙으로 3기 연속 임기를 계속할 수 없다.
5. 사임의 경우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까지로 한다.
6. 기획전략위원회 위원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Advisory Group을 설치할 수 있다. Advisory Group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13조(기획전략위원회 특별위원)

1. 기획전략위원회는 중장기 표준화전략(안)을 책정하 기 위해서 특별위원을 기획전략위원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기획전략위원회 특별위원은 기획전략위원회 위원 의 추천에 의해 기획전략위원회에서 선임되고, 표 준화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선임에는 제17조에서 정한 투표권 합계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기획전략위원회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획전략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승인에는 제17조에서 정한 투표권 합계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제14조(전문위원회)

1. 표준화회의에 중장기 표준화전략에 의거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권한 을 갖는다.  
①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외의 사항에 대한 표준

화회의 제출안 작성

- ② 그 외 표준화회의에서 정한 사항

### 제15조(전문위원회 위원)

정회원은 해당전문위원회의 활동에서 직접적이며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해당 전문 위원회의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는 정회원을 대 표하는 직원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가시킬 수 있 다. 참가에 있어서는 전문위원회에 위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16조(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각 전문위원회에 각각 전문위원장 1명 및 부전문위 원장 1명을 둔다.
2. 전문위원장 및 부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입후보에 의해 전문위원회의 투표로 선임한다. 선 임에는 전문위원회에 등록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 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복수 입후보자가 있고 어느 쪽의 입후보자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없는 경 우는 상위 2명의 입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선임하기 위해 투표를 행하고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 임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 다.
3. 전문위원장 및 부전문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재임할 수 있다.
4. 전문위원장 및 부전문위원장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의 경우는 신속하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후임자 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전문위원장이 동시에 사임 또는 임기만료한 경우, 사무국은 후임자의 정부위 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 해야 한다.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대행하고, 전문위원장 선임 후에

는 즉시 대행직무를 물러나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신설 또는 모든 통합의 경우도 같은 것으로 한다.

5. 사업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제17조(투표권)

1. 표준화회의의 위원의 투표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투표권은 위원이 소속한 회원이 납입한 회비의 금액을 기본단위로 한다.
- ② 회원은 경영하는 주된 사업에 의해 다음에 게재된 분야의 하나로 분류한다. 회원이 분류된 분야의 결정은 이사장이 행한다.
  - 가. 제1종 전기통신 사업자
  - 나. 제2종 전기통신 사업자
  - 다. 제조업자
  - 라. 상기에 게재된 자 이외의 관계자
- ③ 표준화회의에서 총 투표권수는 합계 300표로 하고, 각각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100표,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에 50표, 제조업자에 100표 및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제2종 전기통신 사업자 및 제조업자 이외의 관계자에 50표를 배분한다.
- ④ 표준화회의의 위원의 투표권은 이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그(해당)위원이 속한 분야의 총 투표권수

×

√ ((해당)회원의 회비)

---

□ √ ((해당)회원이 속한 분야의 회원별 회비)

- ⑤ 투표권의 근거가 되는 회비는 집회형식의 표준화회의에 있어서는 개최일, 전자투표형식(집회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액세스하여

표결을 행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함)의 표준화 회의에 있어서는 투표개시일의 회비로 한다.

단, 전자투표형식의 표준화회의에 있어서 투표기간 중에 탈퇴한 회원의 투표권에 관해서는 탈퇴전에 투표된 경우의 투표는 유효하지만 탈퇴후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기획전략위원회 위원의 투표권은 위원 각각 1표로 한다.
3. 표준화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과반수에 의해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을 대행하고 있는 부의장은 1표를 투표할 수 있다.

제18조(평의회)의 심사

표준화회의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표준에 대해서 평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19조(표준의 준수 등)

1. 회원은 표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보급에 힘써야 한다.
2. 표준화회의는 전항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이사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표준의 공개 등)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표준은 그것을 일반에 공개한다.
2. 공개방식은 따로 정한다.
3. 공개된 표준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이외에서의 이의 등은 그것을 성실히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 표준의 재평가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지상 증계

제21조(표준화회의에의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표준화회의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는 표준화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11월 5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12월 2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27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5월 6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2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단, 1989년 6월 3일까지의 사이는 또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6일부터 실시한다. 단, 199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는 또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경과조치로서 9월 26일 현재의 부문위원장을 기획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기획전략위원회 회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TTA**

### 제7차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표준화 회의(ASTAP) 유치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산하 표준화 회의인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이 오는 8월 4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은 ASTAP은 지난 2000년 제3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아·태 지역에서 정보통신표준화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ASTAP에서는 이동통신, 차세대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의 표준화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의 표준화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표준화 활동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ASTAP 개최 기간에 참여국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 PC방, 주요 정보기술(IT)기업 등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아·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PT(Asia-Pacific Telecommunity)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기 통신발전을 위해 지난 79년에 발족한 국가간 협의체로 사무국은 태국(방콕)에 있다. ASTAP은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표준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8년 APT 산하에 설립한 표준화 회의다. 우리나라는 현재 ASTAP 부의장(삼성전자 김영균 전무), 다수의 전문가 그룹의 의장직(12개 전문가 그룹 중 6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